

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

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-218호(2023. 10. 19)로 도시개발구역(변경) 지정 및 개발계획(변경) 수립·고시되고,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2023-255호(2023. 11. 23.)로 실시계획(변경) 인가 및 고시된 「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」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 제29조에 따라 환지계획이 인가(신성장개발과-10808, 2023. 12. 14.)되어 「도시개발법」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예정지를 지정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14일

(주)울산복합도시개발 대표이사

1. 사 업 명: 「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」
2. 위 치: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51-3번지 일원
3. 면 적: 1,532,460㎡(환지대상면적: 844,573.3㎡)
4. 시 행 자: (주)울산복합도시개발
5. 시행방식: 미분할 혼용방식(수용 또는 사용방식 + 환지방식)
6. 사업기간: 2020. ~ 2026.
7.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: 2023년 12월 14일
8. 환지예정지 지정내역(환지 위치, 면적 등)
 - 가.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에게 개별 통지
9.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유의사항
 - 가.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「도시개발법」 제36조에 따라 종전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.
 - 나. 환지예정지는 확정 측량 시 면적 증·감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 증·감 부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(징수 또는 교부)하게 됩니다.
 - 다.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「도시개발법」 제53조 및 「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(환지) 시행규정」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(주)울산복합도시개발 대표이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라. 종전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이나 주소지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「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(환지) 시행규정」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(주)울산복합도시개발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같은 시행규정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(주)울산복합도시개발 대표이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토지소유자 등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마. 환지예정지 조서는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「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 (환지) 시행규정」 제37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증명원을 발급해 드립니다.

10.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에게 알리고자 우편으로 개별통지하였으나, 주소 불분명 등으로 우편반송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 내용으로 갈음합니다.

11. 기타 관계도서(환지예정지 인가 내용)는 (주)울산복합도시개발 사무실(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도호길 31, 502호)에 비치하고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지담당자 (052-219-846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